

Korean Tax Update

June 2018, Issue 48

[조세뉴스]

국세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보기]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등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원 위촉, 해촉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세무서 이의신청 심리시 법령해석자문을 제공하고, 세무서 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고시 대체 방안 등 기타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함.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보기]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재결청 상향을 조정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등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18.2.13) 및 시행규칙('18.3.19)을 반영함. 또한 기한후 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보호를 강화함.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 자율신고원칙을 신설하고 청렴서약서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명확인제도를 폐지하여 조사절차를 개선하고 간접확인 처리 원칙 등 신고내용 확인 업무 절차를 개선함.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지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보기]

과세 전 사전검증 장치로서 과세사실판단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지문사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과세자문신청요건을 강화하고 자문 제외 대상을 추가함.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은 고액(100 억)이라 하더라도 지방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신청기한을 세무조사인 경우 조사기간 종료일 14 일전까지로 변경함(기존 7 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6월 22일(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금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세·재정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7.3(화)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하여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예규·판례]

[판례 1]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 두 36233 판결

- 이 사건 약정비용은 ①설계상황, 건물규모, 투입 비용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되는 점, ② 이 사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도 위 약정비용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③ 이 사건 공공지원시설의 분양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순수 공사비의 90%에 상당한 금액(단, 분양평당 470 만원을 상한으로 함), 경기도 승인'이라는 대략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의 분양에 관한 것으로 양자를 같이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가에 포함된다거나 그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는 볼 수 없음.

[판례 2] 주식 양도계약에서 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정산합의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 두 36003 판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판례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 두 73068 판결

-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3 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례 1]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서 2540, 2018. 4. 26.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소송결과로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채무가 피상속인 생전에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였다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데, 지연손해금(소장부분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함.

[심판례 2]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중 0774, 2018. 4. 30.

- 쟁점자문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의 목적을 '신규사업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기존 대출 대환 및 기한 연장)을 위한 금융구조 자문'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대출금의 차입이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종국적으로 청구법인 토지의 개발·공급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토지개발 및 공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전체 자문수수료를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도 1 매로 발급하였다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나 기준 없이 대환대출을 위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산정·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현재 과세사업인 지류 제조 및 판매업은 중단하고 공장 부지를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공급하는 면세사업만을 대부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공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3]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의 시가표준액 산출시 골프장의 용도지수(127)가 아닌 자동차 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의 적용 가능 여부

조심 2017 지 1016, 2018. 5. 9.

- 「지방세법」제 119 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 카트는 「지방세법시행령」제 7 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189, 2015.4.20.)는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지수로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골프장 관리시설 포함)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점,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수익창출 여부에 따라 용도지수를 구분하는 것은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4] 중국자회사가 누적된 회계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인해 동 회계상 잉여금 중 일부 금액의 세부담 시점이 배당 이후인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 서 0413, 2018. 5. 15.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취지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 외국법인세 부과, 후 배당'의 경우와 '선 배당, 후 외국법인세 부과'의 경우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수입배당금 수취 시점과 외국법인세액 발생시점의 선후 관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조문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다만 그 대응이 중요한 것인 점, 자산의 가속상각, 조기상각으로 인한 과세이연과 이 사건 사실관계인 주식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은 결국 세부담 시점을 늦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례 5]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을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 적용 여부

조심 2018 중 1644, 2018. 5. 16.

-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례 6] 그룹 내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그룹 CI 사용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부 1171, 2018. 5. 16.

- 그룹 CI 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효과, 소비자의 신뢰도 증가에 따른 매출증대이나 청구법인은 수직계열화된 그룹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에게 하고 있어 CI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그룹사 내부에 대한 매출까지 포함한 총매출액을 대상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나 그룹내부 매출은 CI 사용 유무와 무관하며, 사용효익이 있는 제 3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7]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309, 2018. 5. 16.

- 청구법인은 2016.12.27. 법률 제 14475 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원시취득의 정의 규정을 신설되기 전인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대법원 2016.6.23. 선고 2016 두 34783 판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 8]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0749, 2018. 5. 30.

- 청구법인은 2011 사업연도 이전부터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였으나, 당초 쟁점보조금을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이를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쟁점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000 정부, 공항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보조금의 교부요강 등을 보면,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사업의 수행 지시, 사업시행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 및 반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변상 및 손실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제 1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 9] 본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증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175, 2018. 6. 1.

-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 조의 4 제 1 호, 같은 법 제 14 조의 3 제 1 항 제 7 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매출의 전부가 제품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독립된 연구소, 연구단지, 연구개발부서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증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 1]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7 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16-835, 2018. 5. 24.

- 현재 우리나라는 한·중 조세조약 등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제 57 조 및 「법인세법」제 57 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 97 조를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액과 한도를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 2] 법령 개정으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5년 이내의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 산정 시 과점주주가 되기 전 소유했던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 2016-73, 2018. 5. 28.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 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 3 조의 규정 취지를 감안할 때 2013. 1. 1. 대통령령 제 24295 호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과점주주의 경우 그 소유 주식 등은 실제 취득일이 아닌 2013. 1. 1. 이후 최초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에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로 추가된 과점주주는 기존 법령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3. 1. 1. 개정 이전 5년 이내에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최고비율 산정 시 개정법령에 따라 추가된 과점주주가 5년 이내에 소유했던 주식까지 포함한 최고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예규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2018. 5. 8.

- 내국법인이 「상법」제 360 조의 15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이전에 의하여 종전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제 18 조의 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제 38 조제 1 항 각 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예규 2] 물적분할(비적격)과 관련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다를 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재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신설법인 장부에 그대로 이기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세제-7445, 2018. 6. 4.

-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법인의 물적분할(비적격) 당시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고,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 10 조 제 1 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견 장부가액은 분할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둔 것으로 이를 곧바로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움.

[예규 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 4. 25.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 27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4항 제 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함.

[예규 4]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세제-8071, 2018. 6. 20.

- 설계 당시부터 연구동·사무동으로 구획 설계가 되었고, 연구동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사무동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사무동 간의 출입증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동으로는 출입이 통제된다 할지라도 연구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됨.

[예규 5]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복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305, 2018. 5. 30.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후 최종복토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부에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예규 6]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105, 2018. 6. 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래픽 부서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과 관련한 별표 6의 제 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BUSINESS Watch, 직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혜택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S.Manager(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8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